

- EV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-
글로벌 경형EV 기술/시장 동향 조사 및 비즈니스 미팅 운영 용역

과 업 지 시 서

2026. 8.



[재]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

목 차

I . 과업개요	1
II . 과업내용	1
III . 과업수행 지침	6

I 과업개요

1. 개 요

- 과 업 명 : 글로벌 경형EV 기술/시장 동향 조사 및 비즈니스 미팅 운영 용역
- 과업목적 : 경형 EV 산업 신규 수출 시장 개척 및 수요처 발굴을 위한
비즈니스 미팅 운영
- 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~ 2026년 10월 31일
- 계약금액 : 일금 사천만원 (₩40,000,000원, 부가세 포함)

II 과업내용

1. 필요성

- 경형EV 관련 국·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타겟 국가 시장 동향 조사 분석을 통하여 잠재 고객사의 정확한 Needs와 경쟁 현황 파악을 통한 최전선 산업 시찰 및 지원기업 역량강화
- EV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기업의 전시회 참관 및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을 통한 잠재 고객사 발굴 및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판로 개척 지원
- 글로벌 관련 기관/기업 방문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, 매출처 다변화, 현지 거점화 달성등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및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
- 기업 보유 제품에 대한 현지 시장 조사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지원과 네트워크 기반 조성 및 실질적인 거래 성사를 위한 지속적인 연계 지원

2. 과업 범위

□ 공간적 범위

- 대상국가 : 유럽(독일 및 오스트리아, 슬로바키아 등)
 - (독일) Frankfurt Automechanika 2026(자동차 부품 전시회) 참관 및 Opel rüsselsheim 공장 등
 - (오스트리아) 영산글로넷 본사 및 Aspern Seestadt*등
 - (슬로바키아) Volkswagen 공장(브라타슬라바)

※ 섭외 바이어 및 기업/기관은 추진 일정/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

□ 시간적 범위

- 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~ 2026년 10월 31일
- 행사기간 : 2026년 9월 6일 ~ 9월 14일/예정

□ 내용적 범위 :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수요처 발굴

- 경형 EV 기술/부품 관련 해외 정책 및 산업, 기술동향 연구보고서
- 기업 네트워크 확대 및 성과 도출을 위한 수요처 및 비즈니스 미팅 처 발굴
- 수출 상담회, 비즈니스 미팅, 세미나, 간담회 등 행사 운영
- 국외 모빌리티 전시회 참가 또는 참관 지원
-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기업간 연계 등 사후관리
- 기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체 과정에 수반되는 사항

※ 본 용역비에는 발주기관 및 참여기업 관계자의 항공료, 숙박비, 일비, 여행 자보험, 비자발급비, 거마비 등 개인별 국외출장성 경비를 포함하지 않는다.

3. 과업 추진 세부내용

□ 경형 EV 기술/부품 관련 해외 정책 및 산업, 기술동향 조사

- 경형 EV 산업 관련 글로벌 시장 트렌드 분석
- 주요 국가별 정책 및 규제 현황조사
- 시장/기술 동향 및 핵심 기술 분석

※ 연구보고서는 유럽(독일, 오스트리아 등)시장 분석 결과에 기반한 현지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 운영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

□ 기업 네트워크 확대 및 성과 도출을 위한 수요처 및 비즈니스 미팅처 발굴

○ 현지 글로벌 모빌리티 기관/기업 방문 주선(2회 이상)

- 기업방문을 통한 선진 제조 시설 구축/가동 현황 파악 등 생산 공정 벤치 마킹 지원
- 해외시장 진출 및 현지 공급망 진입을 위한 ESG 규제 대응과 공급망 실사법 및 지원 관련 정보 제공
- 국내 참가기업의 주요 설비/기술, 주력 제품 홍보
-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업별 자동차 전문 분야 통역원 배치 및 통역 지원

○ 바이어 정보 조사(바이어 DB취합) 및 모집 등 매칭 관리

-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모집을 통해 사전 바이어 확보 및 리스트 공유
- 완성차 업체, 부품사 기술개발 담당자 등 섭외 대상 후보군 조사 및 해외 바이어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통한 참가기업과 바이어간 정보교환 후 매칭
- 참여기업의 주력 기술/제품을 고려한 잠재 바이어 발굴
- 매칭시스템을 활용한 바이어-국내기업 간 일정 및 운영 방법 등 매뉴얼 제공·교육

※ 완성차(OEM) 또는 Tier-1의 경우, 참여기업 모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

□ 수출 상담회, 비즈니스 미팅, 세미나, 간담회 등 행사 운영

○ 참가업체 자료 취합 및 홍보물 제작

- 바이어 초대장, 업체 소개자료 등 수요처 발굴을 위해 필요한 참여업체 홍보물 제작(영어 또는 해당 국가 언어로 제작)
- 상담장 내 대형 현수막 및 X-배너 등 필요 환경물 제작

- 수출상담회/1:1비즈니스 미팅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준비
 - 행사장 임대/집기 임차 등 행사장 구축 및 운영 총괄
 - 상담장 외부 바이어 대기 공간 및 다과 마련
 - 행사 진행 운영인력 2명 이상 배치, 사진 촬영
 - 참여기업 1개사당 1인 통역 배치(상담일지 건별 작성/결과보고서 제출)
 - 세미나 개최 및 간담회 운영에 따른 장소/인력 섭외 및 운영 전반
- 국외 모빌리티 전시회 참가 또는 참관 지원
 - Frankfurt Automechanika 2026 전시회 참관 지원(전시 참여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일정 안내 등)
 - 기업별 관심 부스 투어 진행(투어 그룹별 전문 통역원 배치)
-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기업간 연계 등 사후관리
 - 전시회 및 국외 출장 만족도 조사
 - 바이어 피드백 취합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
 - 후속 업무 진행 확인 및 F/UP 지원
 - 현지 업무 대행 및 참여기업 마케팅/매칭 지속
 - 현지 전시회 및 기업 방문 등으로 구축된 네트워킹 연락망 구축 및 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수혜 기업의 미래 전략 로드맵 구축
- 기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체 과정에 수반되는 사항
 - 행사 운영 차량 준비
 - 현지 방문 기관 및 시찰 장소 예약 및 방문·이동관리
 - 단체 이동 차량(10인 이상) 섭외 및 운영
- ※ 차량등록증, 보험가입 확인 등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서류 사전 검토 必
 - 현지 행사 운영에 따른 장소 섭외 및 진행 인력(통역 등) 배치
 - 기타 행사 추진에 따라 진흥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

4. 과업 착수 및 결과보고

□ 과업 착수

-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 시 착수계 및 계약서,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과업수행계획서를 과업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착수계 제출서류 : 용역 공정표, 인력 투입계획서, 보안 서약서 및 재직 증명서, 과업수행계획서, 산출내역서 등

□ 진행사항 보고

- 용역사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과업 진행사항을 시행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회의 일시와 장소는 과업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구 분		보고시기	주요내용	보고형식
정기 보고	착수보고	1회 (계약체결 후 5일 이내)	- 착수계 - 과업수행계획서 - 기타 증빙서류	착수보고서 (서면)
	중간보고	1회 (8월 초/중)	- 중간보고 자료(발표자료) - 기업 대상 세부 일정 및 비즈니스 미팅 관련 보고 - 초청바이어 리스트 등 포함	간담회 (대면)
		1회 (9월 30일까지)	- 수출상담회, 비즈니스 미팅, 기업 방문 등 관련 실적 및 세 부내용에 대한 결과보고	서면
	최종보고	1회 (과업 완료 후 5일 이내)	- 최종 결과보고서, 정산보고서	서면 또는 대면
수시 보고	문제발생 및 주요 이슈사항	즉시	-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- 해결방안 및 처리 결과	서면
	기타	협의사항	-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- 기타사항	서면 또는 구두

※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□ 종합 결과보고

○ 제 출 일 : 계약 완료 후 7일 이내

○ 제 출 물 : 최종 종합보고서 원본 3부 및 과업 결과물이 담긴 USB 1개

－ 경형 EV 기술/부품 관련 해외 정책 및 산업, 기술동향 조사 연구내용

－ 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, 비즈니스 미팅등 수요처 발굴 내용

· 국가별 참여기업 및 바이어리스트, 기업별 상담결과 및 계약 성과

· 진흥원과 합의된 상담일지 양식을 제출하며, 상담 내용 및 향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내용과 향후 발전 전략에 시사점·제언 등 포함하여 제출

·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보고서(행사 만족도 조사, 기업 관점 비즈니스 미팅의 성과 등) 제출

－ 참여기업 수출계약 추진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마케팅 지원

Ⅲ 과업수행 지침

1. 정 의

□ 본 과업지시서의 명시된 사항은 「경형EV 기술/시장 동향 조사 및 글로벌 수요처 발굴 용역」에 있어서 (재)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.)과 과업 수행자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.)간에 성립되어야 할 연구, 용역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.

□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의 상호간에 의견 발생 시에는 “갑”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.

2. 일반지침

- “사업수행기업”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제반규정 및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진흥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수행기업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.
- “사업수행기업”은 발주기관(진흥원)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 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- “사업수행기업”은 진흥원이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능한 자료는 지체없이 제출하고 작성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자료는 준비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 추진 성과물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반영해야 하며 타 기관과 차별적인 이미지로 그 응용이나 활용에 있어 적용이 용이해야 한다.
- 수행기업이 창출해낸 모든 결과물은 국내·외를 막론하고 저작권, 특허권, 의장등록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.
- 발주기관은 과업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범위를 벗어난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합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.
-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,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, 그로인한 재단 및 대상기업의 물적, 심적 피해에 대하여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.
- 수행기업은 제출한 결과물이 진흥원의 심의결과 수정이나 보완이

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, 진흥원이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수행기업이 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재단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재단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3. 과업의 범위 변경 조건 및 용역비 조정

- 과업범위 변경 조건

- 과업의 범위가 축소,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
- 용역기간 중 재단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
- 기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- 용역비의 조정

- 과업범위 변경의 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,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4. 위반사항 및 계약 해지에 대한 조치

- 재단의 해당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·종료 되었을 경우

- “발주기관”은 “사업수행기업”이 사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사업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사업수행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사업 수행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 - 사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“발주기관”이 판단될 때
 - 사업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
 - 기타 “발주기관”의 지시나 요구에 이유없이 불응할 때
- ※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행기업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고, 진흥원과 수행기업 간 상호협의 (필요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산정)를 통해 정산금액을 결정한다.

5. 기타사항

- ☐ 본 과업에 명시된 내용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기획 내용이 있으면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을 거쳐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- ☐ 과업 수행 중에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단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☐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이나 수행기업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행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